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한 부서(허가과)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 업무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 안보관광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총무국 분장사무중 “병무행정 종합관리”업무 삭제(안 제5조)
- 나.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함
(안 제6조, 제7조)
 - 1) 공장설립 승인
 - 2)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협의·허가·신고지 사후관리)
 - 3)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 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신설(안 별표3)
- 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안 제16조제2항)
 - 1) 시설의 유지관리(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도라산역 등)

- 2) 관광지정비 및 시설, 관광지 환경보전
- 3) 관광상품 홍보, 관광지 지도단속 및 안내
- 4) 민북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개발투자 유치지원
- 5) 평화·생태공원 관리
- 6)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관리
- 7)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
- 8) 임진각관광지 관리
- 9) 관광방문기념품 판매사업 운영
- 10) 관광판매소 유지관리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내지 제106조, 제10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첫째, 총무국 분장사무중 「병무행정 종합관리」업무가 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 둘째, 건설국 분장사무중 「공장설립 승인」과 「농지관련 인·허가 및 사후관리」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며,

- 셋째, 지난 5월 31일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과 임진각, 도라산역등의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경영수익 제고를 위해 관리정원이 승인된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내용중 국별 분장사무의 이관은 사무의 집행과 관리상 상호 연계성과 일관성,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합리적으로 분장되어야 하므로 대상사무의 이관 조정은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 또한, 「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에 의거 “특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표준정원의 책정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법적인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102조 (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105조 (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나. 내용타당성

- 건설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코자 하는 “공장설립승인”등 3개 사무는 지난 2000년 10월 고객중심의 민원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 추진지침」에 따라 건설국 「건축과」를 「허가과」로 개편하면서 사회산업국에서 이관됐던 사무중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써 국소관 업무의 연계성 인·허가와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약 1년 10개월간 허가과에서 처리하던 「토지관련 인·허가 및 공장설립승인」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해관계 주민(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절한 인력 및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또한,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설치는 월드컵을 계기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향후 단계적으로 조성될 민북관광단지 개발과 평화·생태공원관리등

파주시가 지향하는 「비무장지대의 세계적 생태관광지」 조성 목표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이렇듯 필수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신설은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늘리는 계기가 됨으로 앞으로 사업소가 관장하는 시설 유지관리 노력과 더불어 사용료 징수와 기념품 판매사업등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익증대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